

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○ 존경하는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송파 제4선거구,

주택공간위원회 위원 이성배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,

현행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공공시행자, 지정개발자, 사업대행자 등도  
조례 제77조 시공자 등의 선정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 
있습니다.

○ 현행 조례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18조제1항에 따라  
공공지원의 대상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, 조합이 건설업자  
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따라서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공공시행자, 지정개발자, 사업대행자 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받고 있지 않는데, 이로 인해 확정되지 않은 정비계획을 기반으로 공사비 세부내역 없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등 업체 선정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법적 분쟁 및 사업지연이 예상되는 바입니다.
- 이에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시공자 선정 등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, 조례 제77조 시공자 등의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